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 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준)불연재료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①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이하 동일)이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또는 ② 현장에 시공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공된 제품이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규정
- 다.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되어야 하는 수평 거리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
- 라.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제1항 제7호에 따른 서류(제3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이전”으로 한다.

7.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법 제10조제1항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단, 시공된 제품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가.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시료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을 인증하고 개개의 성능 등이 이미 인정된 시료와 동일한 성능인지 시험·판정하여 개별 제품에 합격표시 부착)를 하는 시험·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나. 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발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료명에 해당 제품 모델명과 설치 현장명이 함께 기재될 것)

별표 2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정보설비	
---------	--

별표 2에 제1호나목1) 안전시설등 종류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1호나목1) 안전시설등 종류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설치할 것
------------	---

별표 2 제2호1) 본문 중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란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1) 중 “화재감지기”를 “화재수신기”로 하며, 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 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

나)영업장의 가로와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

7.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가.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시료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을 인증하고 개개의 성능 등이 이미 인정된 시료와 동일한 성능인지 시험·판정하여 개별 제품에 합격표시 부착)를 하는 시험·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나. 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시험 성적서(현장에 시공된 실제 제품에서 발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료명에 해당 제품 모델명과 설치 현장명이

②・③ (생략)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u>이전에</u>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⑤ (생략)	<u>함께 기재될 것)</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제1항 제7 호에 따른 서류(제3호가목의 경우 만 해당한다)와 <u>이전</u>----- -----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실내장식물 성능기준안

1. 제정이유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어,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함에 있어 충족하여야 하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실내장식물에 적합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실내장식물 성능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성능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실내장식물로서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체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의 시험체에 대하여 총 3회 시험하였을 때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아니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시험하였을 때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일 것
3.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복합자재(강판과 심재 등으로 이루어진 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험할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는 각 재료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함

제3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실내장식물로서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라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의 시험체에 대하여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가열강도 50kW/m^2 로 3회 시험하였을 때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고,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폭과 너비의 15%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을 것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시험하였을 때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일 것
3.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복합자재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험할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는 각 재료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단, 시험체의 두께가 6mm 미만인 경우(흡음용 커튼 및 방음용 커튼 등 실제 사용조건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실제 사용 조건에서 사용되는 바탕 기재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포함한 두께가 6mm 이상이 되도록 보완한 시험체에 가목의 기준에 따라 총 3회 추가로 시험하여야 하며 가목의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